

# 신학대학 졸업시험 내규

제1조 【졸업시험】 학칙 제 44조에 의거, 신학대학 졸업예정자 및 신학 복수전공 졸업예정자는 학위청구를 위해 신학대학 졸업시험을 응시해야 한다.

제2조 【졸업시험 응시자격】 신학대학 신학과 재학생 및 신학복수전공자 중 졸업예정자로 한정한다.

제3조 【졸업시험 과목】 ① 졸업시험 응시자는 다음 ② 항에 명시된 성서학, 역사와 사상, 신학과 실천 등 3개 학문 영역에서 각각 한 과목씩 선택하여 총 3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.

② 졸업시험 과목

가. 성서학: 구약신학, 신약신학

나. 역사와 사상: 역사신학, 조직신학, 사회와 윤리

다. 신학과 실천: 목회와 상담, 기독교교육, 선교와 문화, 예배와 설교

제4조 【졸업시험 출제 및 응시】 ① 졸업시험 문제는 해당 전공교수가 출제한 졸업시험 문제은행에서 출제한다.

② 졸업시험은 매학기 지정되는 졸업시험 시행 기간 중에 시행한다.

제5조 【합격 및 재시험】 ① 문제 출제자가 본인이 출제한 문제를 채점한다.

② 각 과목의 합격점수는 60점 이상으로 한다.

③ 응시자는 불합격 과목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.

④ 합격과목은 응시한 학기와 그 다음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.

⑤ 결시자에게는 재시험을 치를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

제6조 【졸업시험 채점 및 이의제기】 ① 문제 출제자가 본인이 출제한 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채점할 의무가 있다.

② 채점자는 졸업시험이 실시된 주의 금요일까지 채점을 완료하여 학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③ 학과장은 채점 결과를 시험이 실시된 다음 주 월요일에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.

④ 응시자는 본인의 점수 결과에 대하여 <양식 1. 졸업시험 결과 이의제기 및 답변서>를 통해 학과장을 거쳐 해당문제 출제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⑤ 이의제기는 점수 결과가 통보된 주의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⑥ 출제자는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<양식 1. 졸업시험 결과 이의제기 및 답변서>를 통해 학과장을 거쳐 이의 제기자에게 답변해야 한다.

⑦ 출제자의 이의제기 답변에 대하여 이의 제기자가 불복할 경우 <양식 2. 졸업시험 결과 재심 청구서>를 통해 3일 이내에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⑧ 학과장이 재심 청구를 받을 경우 학과장은 출제자를 제외한 3인의 신학대학 교수를 선정하여 7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⑨ 이의 제기자는 재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⑩ 재시험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.